

Ⅱ - 54	제 목	분할합병시 계속공사의 승계여부	
회신일자	2005년 10월 5일	회신방법	산자부 사이버민원실
의 요 지			
○ 전기공사업을 하고 있는 A 회사에서 전기공사업만 분할하여 B회사로 합병을 하고자 합니다. 이런 경우 현재 A회사에서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두 건 있습니다. 한 건은 공동이행방식으로 구성업체로 공사 중이고 한건은 단독으로 공사를 시공 중에 있습니다 질의) 이런 경우 발주처(구청,시청)에 동의를 얻어서 A회사에서 B회사로 승계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			
회 신 내 용			
답변) ○ 전기공사업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공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시공 중인 전기공사가 있는 때에는 그 발주자의 동의를 받아 시공 중인 전기공사의 도급에 따른 권리·의무를 함께 양도하거나 당해 전기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한 후가 아니면 이를 양도할 수 없으며 승계신고시에는 발주자의 동의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 ○ 참고로 시공 중인 공사가 공동도급일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동의 외에 수급체구성원간의 약정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.			